

업무 제휴 협약서

2016년 6월 22일자로 다음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.

한국콘텐츠진흥원

전남 나주시 교육길 35 (이하 “한국콘텐츠진흥원”)

호텔현대목포

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1 (이하 “호텔현대목포”)

제 1 조 (목 적)

본 협약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“한국콘텐츠진흥원”과 “호텔현대목포” 상호간의 상호 공동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제휴 서비스 대상)

본 협약서 상의 제휴 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본 협약에 따른 제휴 서비스 대상인 “호텔현대목포” 이용고객으로 한다.

제 3 조 (제휴 서비스 관련)

1. “호텔현대목포”는 본 협약기간 시작일로부터 “한국콘텐츠진흥원”에 하기 2항의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. 또한 “호텔현대목포” 는 하기 제휴 서비스 관련한 클레임 발생시 최대한 신속, 성실하게 해결하여야 한다. 단, 제휴 서비스 종료와 관련한 고객 민원은 “한국콘텐츠진흥원”과 “호텔현대목포”가 상호 협력하여 처리한다.

2. “호텔현대목포”가 제공하는 제휴 서비스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.

※ 본 협약체결로 기존의 제휴협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본 제휴사항을 신규 적용한다.

< 1 > 제휴서비스

▷ 호텔현대목포 객실료 할인적용

1-1 디럭스룸(유달산방향 디럭스룸 객실 기준)

- 주중(일요일 ~ 목요일) : 정상가 220,000원 → 할인가 110,000원
- 주말(금요일, 토요일, 연휴기간) : 정상가 220,000 → 할인가 130,000원
- 성수기(7.22~8.15, 12.31) : 정상가 220,000 → 할인가 160,000원
- * 바다방향 침대객실 및 온돌객실 이용시 2만원 추가

1-2 스위트룸

- 주중(일요일 ~ 목요일) : 정상가 450,000원 → 할인가 220,000원
- 주말(금요일, 토요일, 연휴기간) : 정상가 450,000 → 할인가 260,000원
- 성수기(7.22~8.15, 12.31) : 정상가 450,000 → 할인가 320,000원
- * 온돌객실 이용시 2만원 추가

1-3 부가혜택

- 가족단위 이용시 추가침대 1 무료제공(요청시)

▷ 호텔현대목포 상설뷔페(조식) 10% 할인

단, 위 할인혜택은 다른 혜택과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음

< 2 > 대상

▷ “한국콘텐츠진흥원” 임직원 및 사내 협력사 임직원으로 사원증을 지참, 제시하는 고객

3. “한국콘텐츠진흥원”과 “호텔현대목포” 는 이메일 또는 Fax 등으로 본 협약에 의한 제휴 서비스 외의 이벤트 등 기타 제휴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논의하고 진행할 수 있으며, 양 당사자 협의 하에 위와 같은 기타 제휴 서비스 제공에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4 조 (예약 및 대금정산)

본 협약에 의해 객실을 예약 이용하는 경우 대표번호(061-463-2233)로 문의하여 예약을 접수한다. “한국콘텐츠진흥원”은 업무제휴 내용을 사내홍보망을 이용하여 홍보하며 임직원이 이용할 수 있게 협조하며, 임직원의 객실 이용대금은 “호텔현대목포”가 이용고객에게 직접 청구한다.

제 5 조 (협약 기간)

본 협약에 의한 제휴 서비스 제공기간은 제휴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협약기간 연장시에는 상호협의를 통해 진행한다.

제 6 조 (홍 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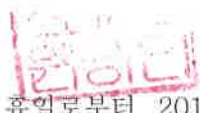
1. “한국콘텐츠진흥원”과 “호텔현대목포”는 상대방과 사전 협의하여 각 사가 제작하는 제작물 및 광고물에 각 사의 비용 부담으로 본 협약에 의한 제휴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.

2. “한국콘텐츠진흥원”과 “호텔현대목포” 는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상대방의 상호, 로고, 상표 등을 본 협약서에 명기된 목적 이외의 영업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3. “한국콘텐츠진흥원”는 내부 홍보망을 이용하여 전사적으로 홍보하여 “호텔현대목포”를 이용할 수 있게 협조한다.

제 7 조 (비밀유지)

1. “한국콘텐츠진흥원”과 “호텔현대목포”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내용이나 회원정보 및 기타 영업상 비밀 등 일체의 정보를 상대방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

2. 전 항을 위반하여 상대방 혹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그 위반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 등은 물론 이와 관련한 형사상의 처벌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.

3. 본 조는 본 협약이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효력이 있다.

제 8 조 (손해 배상)

“한국콘텐츠진흥원”과 “호텔현대목포”는 상호합의 없이 본 협약의 조항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, 회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위반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 및 제3자,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.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
단, 관련 법령이나 감독당국의 규제 등으로 이와 달리 하여야 할 불가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 9 조 (협약 내용의 변경 및 변경 사항의 통지)

1. “한국콘텐츠진흥원”과 “호텔현대목포”는 필요한 경우 제휴내용을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2. “한국콘텐츠진흥원”과 “호텔현대목포”는 상호, 대표자, 소재지, 전화번호 등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협약체결 시 제출된 일체의 서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변경사항을 서면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협약 해지)

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기간 중이더라도 “한국콘텐츠진흥원” 또는 “호텔현대목포” 는 본 협약을 서면으로 해지 할 수 있다.

1. 상대방이 파산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 등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

2. 상대방이 강제집행(가압류, 가처분 포함)을 받거나 경매신청을 받았을 경우

3. 쌍방간의 합의 없이 일방이 본 협약 상의 제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

4. “한국콘텐츠진흥원” 또는 “호텔현대목포” 가 본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그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사자가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해당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5. 관련 법령, 정부 정책 및 제도나 감독기관의 유권해석 등 본 협약과 관련한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,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본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상대방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변경 요구 및 이에 관한 협의에 응하지

아니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.

제 11 조 (분쟁 해결)

1.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법령의 규정 및 관습에 따른다.
2. 본 협약의 각 조항의 해석상 쌍방간에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쌍방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상호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.
3.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"호텔현대목포"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 12 조 (신의성실)

“한국콘텐츠진흥원”과 “호텔현대목포”는 상대방의 이미지와 명성을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상호 협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제3자 양도 금지)

“한국콘텐츠진흥원”과 “호텔현대목포”는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 할 수 없다.

제 14 조 (불가항력 면책)

전쟁, 폭동, 반란, 화재, 홍수 등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본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본 협약상의 의무이행이 지연되는 경우, 양 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, 의무이행 등을 하지 못한 당사자는 가능한 이와 관련한 상세사항과 향후 진전사항을 상대방에 알려야 한다.

제 15 조 (협약서의 작성)

“한국콘텐츠진흥원”과 “호텔현대목포”는 본 협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상호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6. 6. 22

전남 나주시 교육길 35

한국콘텐츠진흥원

원장 송성각



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1

호텔현대목포

총지배인 오명규

